

국립경국대학교 학칙

제정 2025. 2.27.(규정 제1호)

1차 개정 2025. 6.11.(규정 제187호)

2차 개정 2025. 8.18.(규정 제1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립경국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국립경국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성실하며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이 대학교의 인재상은 “바른 됬됨이로 꿈을 실현하는 경국대인” 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품성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인재 양성
2. 넓고 깊은 배움으로 자신감을 갖는 인재 양성
3. 하나를 보며 다음을 그려내는 인재 양성
4. 여러 가치와 함께 어울리는 인재 양성

제3조(캠퍼스) 이 대학교에 안동캠퍼스, 예천캠퍼스를 둔다.

제3조의2(공공형대학) 이 대학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형대학’ 으로서 대학의 특성화와 공공성 강화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신설 2025.6.11.)

제4조(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① 이 대학교에 인문사회·IT대학, 생명과학·공과대학, 사범대학, 공공수요인재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간호학부, 성인학습자학부, 자유전공학부를 둔다. (개정 2025.6.11.)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행정경영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한류문화전문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5.8.18.)

③ 단과대학에는 학부 또는 학과를 두며 학생의 모집단위는 단과대학, 학부 또는 학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학원은 「국립경국대학교 대학원학칙」 으로 정한다.

제5조(융·복합전공 및 맞춤형 학과 등 설치·운영) ①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력에 의한 융·복합전공 및 맞춤형 학과 등을 둘 수 있다.

② 융·복합전공 및 맞춤형 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대학원) 일반대학원, 행정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한류문화전문대학원의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대학원학칙」,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8.)

제7조(부속시설 등) ① 이 대학교에 도서관 및 정보통신원을 두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에 의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장을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거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하고, 정보통신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해당소속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

을 감독한다.

④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립경국대학교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⑤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총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군사교육단) ① 이 대학교에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총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학군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군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별표4]을 둔다.

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교기업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11조(총장) ① 총장은 이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2항 및 임용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부총장, 공공부총장을 두며, 교수로 겸보한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 권한에 대해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부총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정책부총장 : 대학발전 및 특성화 계획 등에 관한 업무, 대학 구조개혁평가 추진 등에 관한 업무

2. 공공부총장 : 예천캠퍼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총장이 명하는 업무

⑤ 공공부총장의 임명은 총장이 도지사와 협의 후 임명하며,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⑥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부총장, 공공부총장, 학칙이 정하는 행정조직 설치상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학장·대학원장) ① 단과대학·대학원에 각각 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이,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이 겸보할 수 있다.

②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14조(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① 학부·학과·전공에 장을 두며, 그 명칭은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으로 한다. 해당 직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단과대학장·대학원장·행정조직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부·학과

및 전공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15조(조직) ① 이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입학협력처 및 사무국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한다.

② 교무처에 교무과·교육혁신과를, 학생처에 학생지원과·취업진로지원과를, 기획처에 기획과를, 입학협력처에 입학협력과를, 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고, 도서관에 학술정보과를 두며 그 분장 사무는 「국립경국대학교 업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③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학술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으며, 예천캠퍼스 단과대학 행정실은 통합지원실로 한다. 행정실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국립경국대학교 업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11.)

제16조(기타 행정조직) ① 이 대학교에 기타 행정조직으로 교무처에 교육혁신본부, 학생처에 취업진로본부, 학생상담센터, 기획처에 전략평가본부, 입학협력처에 대외협력본부, 그리고 행정지원본부,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글로벌대학추진단 대학혁신실을 둔다. 기타 행정조직의 본부장, 센터장, 단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25.8.18.)

②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과, 교육역량개발원, 교양교육원, 어학원을 두고, 취업진로본부에 취업진로지원과, 전략평가본부에 기획과, 대외협력본부에 입학협력과, 행정지원본부에 통합지원실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이 대학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그 밖의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의 설치와 운영 및 분장사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교무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정책부총장, 공공부총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협력처장, 사무국장, 도서관장, 정보통신원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외의 사람을 참석케 할 수 있다.

③ 교무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부속시설 및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단과대학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후생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단과대학 장이 추천한 위원을 총 위원수의 1/2을 초과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정책부총장, 공공부총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협력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을 20%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위원회 외에 이 대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위원회) ①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대학평의회)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교수회) ① 대학의 교육 및 운영·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수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③ 교수회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교수회 평의회) ① 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회 평의회를 두며, 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각 학부·학과·전공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장은 평의원이 되며 평의회 의장을 맡는다.

③ 평의회의 구성, 역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교원의 소속 및 임무) ① 이 대학교의 교원은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및 부속시설,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별표1]에 따른 모집단위별 학부, 학과 등에 소속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립경국대학교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전임교수의 소속변경 및 겸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계약제 임용 등) 이 대학교의 교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이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교원의 교수시간 일부면제, 교수시간 제한, 초과 강의로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교수시간 및 강의로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강사) ① 이 대학교의 교과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비전임교원) ① 이 대학교 비전임교원으로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학술연구대우교수, 비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 방문교원, JA 비전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8.18.)

②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11 제1항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8.18.)

③ 비전임교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8.)

[제목개정 2025.8.18.]

제29조(대학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② 대학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평가
2. 교수업적평가
3. 학과평가

4. 부속시설평가
5. 부서평가
- ③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평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평가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30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31조(재학연한) 이 대학교의 재학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2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교육목적, 전공, 학습자의 특성, 학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현장실습 수업, 실습학기제 및 학교 밖 수업(이동수업, 협동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하며, 각 교과목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단기 및 집중이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35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개교기념일(3월 12일)
4. 여름방학(제1학기 수업 종료일 후부터 제2학기 수업 시작일 전까지)
5. 겨울방학(제2학기 수업 종료일 후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6. 근로자의 날

②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및 등록

제36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이내로 한다.

제37조(입학지원자격) 이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38조(편입학) ① 이 대학교 편입학은 정원 내 편입학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② 정원 내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51조에 의거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선발할 수 있고 정원 외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선발할 수 있다.

③ 편입학 학생수는 4월 1일자 및 10월 1일자 재적생 변동 상황에 명시되는 제적생 수로 하되 직전학기 재적생 변동 상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편입학 할 수 없다.

⑤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및 세부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3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로 한다.

②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1-4학년 학생의 제적생 수에서 편입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허가한다.

③ 재입학 학생수는 4월 1일자 및 10월 1일자 재적생 변동 상황에 명시되는 제적생 수로 하되 직전학기 재적생 변동 상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제40조(입학지원서류와 전형료) ① 입학지원자(편입학을 포함한다)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1조(입학생의 선발) ① 입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3. 대학별고사

② 총장은 입학생의 선발을 위한 일시,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그때마다 정하여 공고한다.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④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정원의 학생) 총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 지역학생, 특성화고졸업자 등에게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43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44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 기일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입학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의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생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면 해당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의 반환기준[별표]에 준하여 반환한다.

③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에서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사람은 이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는 입학할 수 없다.

제4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학과·전공결정 및 자유전과

- 제47조(학과·전공결정)** ① 모집단위가 단과대학·통합 학부(자유전공학부를 포함한다)인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여건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 개시 전에 한다. 다만, 자유전공학부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에 한다.
③ 전공결정 및 전공변경의 범위와 방법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8조(자유전과)** ① 자유전과의 범위는 총장이 정한다.
② 자유전과는 재학 중 1학년 2학기부터 허가할 수 있다.
③ 자유전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자유전과원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유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49조(휴학)** ① 학생은 창업, 질병, 가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
②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은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한 첫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③ 휴학의 종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복학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2조(제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허가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3.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에 이종의 학적을 가진 학생
 4.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
 5. 사망한 학생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 학적으로 보지 않는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 공동·복수학위과정의 학생
 3. 다른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제7장 교육과정

- 제53조(교과목의 구성 및 운영)** ① 이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세분하여 운영한다.
②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체육, 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양과목의 편성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체육 및 외국어 등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

로 균형있게 편성하고, 전공과목은 전공 분야에 맞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④ 교과목은 대학별, 학과(부)별, 학기별 등으로 종합표시가 가능하도록 교과목번호를 부여한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과정은 주전공, 일반전공,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제전공, 트랙,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주전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교양과목의 이수) 학생은 교양과목으로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35학점(간호학과는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6조(전공과목의 이수) ① 학생은 전공과정으로 다중전공, 심화전공, 일반전공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중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학생설계전공, 학제전공으로 구분하고, 다중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전공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 이수: 주전공 36학점, 복수전공 36학점 이수
 2. 부전공 이수: 주전공 51학점, 부전공 21학점 이수
 3. 융합전공 이수: 주전공 36학점, 융합전공(복수전공) 36학점 이수 또는 주전공 51학점, 융합전공(부전공) 21학점 이수
 4. 트랙 이수
 - 가. 맞춤형 트랙 이수 주전공 54학점, 맞춤형 트랙 18학점 이수
 - 나. 전공 트랙 이수 주전공 36학점, 전공 트랙 36학점 이수
 5.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주전공 60학점, 마이크로 디그리 9~12학점 이수
 6. 나노 디그리 이수: 주전공 60학점, 나노 디그리 6학점
 7. 학생설계전공 이수: 주전공 36학점, 학생설계전공(복수전공) 36학점 이수 또는 주전공 51학점 학생설계전공(부전공) 21학점 이수. 다만, 주전공으로만 이수 시 주전공 60학점
 8. 학제전공 이수: 주전공 36학점, 학제전공(복수전공) 36학점 이수 또는 주전공 51학점 학제전공(부전공) 21학점 이수. 다만, 주전공으로만 이수시 주전공 60학점
- ③ 심화전공 이수 학생의 전공학점은 72학점(다만, 간호학과는 102학점)으로 한다.
- ④ 일반전공 이수 학생의 전공학점은 60학점으로 하되, 학과별 특성에 따라 63학점까지 운영할 수 있다.
- ⑤ 최소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⑥ 이 조에서 명시되지 않은 전공과목 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일반선택과목의 이수) 일반선택과목은 이 대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58조(교원양성과정) ① 이 대학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② 교원양성과정의 설치 및 운영,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 ① 학위과정별로 국내·외 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과정 및 복수학위과정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공학교육인증) ① 공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과정을 둔다.

②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61조(졸업인증제)** ① 학생은 졸업을 위해 총장이 정하는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졸업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졸업인증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수강 및 성적

제62조(수강학점) ① 매 학기 수강 기준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경우 15학점
2.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20학점
3.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21학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준학점에 수강 학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를 우선 적용한다.

1.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은 3학점까지
2.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은 최대 3학점까지

③ 그 밖에 수강학점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일에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기재한 수강신청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시험) ① 매학기 말에 교과목별로 정기시험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또는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학기마다 교과목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65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평가,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출석성적은 반드시 5~30%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목의 성적은 통과 또는 탈락(Pass or Fail)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 급	평 점	실 점	등 급	평 점	실 점
A ⁺	4.5	95~100	A ⁰	4.0	90~94
B ⁺	3.5	85~ 89	B ⁰	3.0	80~84
C ⁺	2.5	75~ 79	C ⁰	2.0	70~74
D ⁺	1.5	65~ 69	D ⁰	1.0	60~64
F ⁺	0	59이하			

③ D⁰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한다.

④ 추가시험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교과목 성적 등급이 B⁰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A⁰ 이하로 하고, 재이수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성적은 삭제한다.

⑥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따른 재이수 기준과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학사경고) ① 학기말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자의 지도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경고자 지도 및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67조(학점인정·취소) 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학점취득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매 학기 말일에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8학점까지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며 세부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편입학생의 학점)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편입학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다른 대학 등의 학점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입학 후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입학 전 고등학교,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 나.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최대 3학점 이내

② 제1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20학점	30학점	60학점	90학점	120학점
130학점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
140학점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

제9장 졸업 및 수료

제71조(학년수료) 각 학년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학년 수료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72조(졸업학점) 학부·학과·전공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인학습자학부는 120학점 이상, 사범대학의 모든 학과·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73조(졸업 및 학위) ① 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한다.

② 재학 중인 학생이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이면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별표 2]를 수여한다.

③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거나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정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졸업증서[별지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에는 전공 및 해당 학위를 표시한다.

⑤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각각의 전공 및 학위를 표시하며,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부전공을 표시한다.

⑥ 심화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증명서의 주전공에 학부·학과·전공 명칭 뒤에 “심화과정”을 표시한다.

⑦ 학생은 제2항의 학위를 수여 받으려면 제61조의 졸업인증제에 정하는 졸업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74조(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본인이 원

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76조(조기졸업) ① 학생이 조기졸업 신청학기에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총평점평균이 4.2 이상이면 6학기 또는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졸업의 취소) 졸업한 사람이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수학점 취소로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제10장 학생회 등 자치활동

제78조(학생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국립경국대학교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79조(학생자치단체의 조직) ① 학생자치단체(이하 “학생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은 보호 육성한다.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학생활동의 신고)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외부기관 또는 특정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4. 봉사활동 및 그 밖의 대외활동

② 간행물의 편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연구, 수업 등 대학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2조(학생지도) ① 학부·학과·전공은 매학년 초에 계획을 세워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에 응한다.

② 학생회 및 학생단체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1장 학생포상과 징계

제83조(학칙준수)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연마하여야 한다.

제84조(포상) ① 총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생 상벌 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학생
2. 이 대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학생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5.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학생

② 징계의 종류에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국립경국대학교 학생 상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86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등록금액 및 납입기일을 매 학기 공고한다.

③ 총장은 실험, 실습, 실기 및 그 밖에 교육연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등록금과 함께 또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④ 학생이 보호자 연서로 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하고,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이상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징수 한다.

⑥ 가계가 곤란한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총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7조(휴학생의 등록금) ① 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하는 학생은 그 학기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은 다음 학기 이후의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③ 결석 또는 정학 중인 학생은 결석 또는 정학을 이유로 등록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④ 휴학생의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8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별표3]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학생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③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한다. 다만, 초과학기의 등록금인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제89조(장학금) ①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의 종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경국대학교 장학금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시간제 등록생 및 공개강좌

제90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범 대학 및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는다.

②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금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④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91조(공개강좌) ① 이 대학교에는 평생교육의 진흥, 지역사회의 발전 및 산학 협동을 위하여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수강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개강 전에 이를 정하

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여석이 있으면 공개강좌 중에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공개강좌 수강생으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장 학점은행제

제92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제93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93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등록으로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으로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점을 통산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92조의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4조(학위의 종류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 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제73조제2항의 학위종별 및 전공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은 제92조의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학위종류 및 전공이 유사할 경우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유사함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95조(학위수여 절차) ① 제93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및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학위[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한다.

제15장 학칙개정

제96조(개정 절차) ① 학칙 개정은 총장 또는 1/5 이상의 재직교수가 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10일간 이를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발의된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학칙개정이 발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⑤ 확정된 학칙은 총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장 보칙

제97조(성인학습자학부의 학사운영 등의 특례) 성인학습자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제4장, 제5장, 제7장, 제8장 및 제9장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학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1호, 2025.2.27.)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3조의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 적용은 202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안동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학칙에 따른 국립경국대학교의 해당 학과(부)·전공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립안동대학교로부터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은 이 학칙에 따른 국립경국대학교로부터 입학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종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안동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국립경국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전에 같은 학교로부터 입학할 허가받은 학생은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경북도립대학교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이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정하는 특례 규정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존속기간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국립경국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본다. 또한, 소속 변경되는 교원의 호봉은 폐지된 대학의 기존 호봉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이 학칙의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직원)은 국립경국대학교의 국가공무원 순증 인원만큼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4조(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졸업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 중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학점은 종전의 학칙과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학칙 제정 이전에 시행 중인 국립안동대학교 및 경북도립대학교의 규정, 지침 등은 이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학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 지침 등에서 인용된 종전 학칙의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87호, 2025.6.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중 별표1,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소속 대학 변경 및 학부(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소속 대학과 학부(전공) 명칭 변경이 되는 학과는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인문사회·IT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IT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인문사회·IT대학 IT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데이터과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IT융합공학부 데이터과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경영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회계세무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경영학부 회계세무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무역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경영학부 무역학전공

개정 전	개정 후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문화관광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경영학부 관광경영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법·행정·경제학부 법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법·행정·경제학부 행정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법·행정·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바이오생명공학부 스마트원예과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스마트그린학부 스마트원예과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바이오생명공학부 산업과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스마트그린학부 산업과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바이오생명공학부 식물의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스마트그린학부 식물의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바이오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생명과학·공과대학 스마트그린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보건복지대학 간호학부	간호학부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상담학부 심리상담학전공	인문사회·IT대학 사회복지·상담학부 심리상담학전공
보건복지대학 성인학습자학부 스포츠레저학전공	성인학습자학부 스포츠레저학전공
보건복지대학 성인학습자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성인학습자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제4조(개편 이전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시행 당시 개편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의 소속대학 및 학부, 학과는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 및 학부,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공 선택 전에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개편된 학부로 보거나 개편된 학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인문사회·IT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인문사회·IT대학 IT융합공학부
인문사회·IT대학 사회과학부	인문사회·IT대학 경영학부
	인문사회·IT대학 법·행정·경제학부
	인문사회·IT대학 IT융합공학부
생명과학·공과대학 바이오생명공학부	생명과학·공과대학 바이오생명공학부
	생명과학·공과대학 스마트그린학부

제5조(단과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시행 당시 보건복지대학 간호학부 재적하는 학생은 간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시행 당시 문화관광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관광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98호, 2025.8.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4조, 제6조의 개정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5.6.11.>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편제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부(과) 기준인원	비고		
단과대학	학부	학과(전공)		2026	2026			
인문·사회·IT 대학 <안동 캠퍼스>	인문·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인문·문화학부	492	112			
		중국어문·문화학전공						
		한자문화콘텐츠학전공						
		문화유산학전공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전공						
	사학전공	IT융합공학부	73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경영학부	데이터과학전공	경영학부				85	
		경영학전공						
		회계세무학전공						
	법·행정·경제학부	무역학전공	법·행정·경제학부				70	
관광경영학전공								
법학전공								
패션·예술·체육학부	행정학전공	패션·예술·체육학부	97	<미술학전공> 서양화전공, 한국화전공, 공예전공, <공연예술음악학전공> <공연예술음악학전공> 관 심악전공, 피아노전공, 실용 음악전공, 작곡전공, 실용 음악전공				
	패션라이프스타일학전공							
	공연예술음악학전공							
사회복지·상담학부	미술학전공	사회복지·상담학부	55					
	체육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생명과학·공과 대학 <안동 캠퍼스>	바이오생명공학부	심리상담학전공	바이오생명공학부		449	73		
		생명과학전공						
		백신생명공학전공						
	스마트그린학부	화학생명공학전공	스마트그린학부					113
		스마트원예과학전공						
		산림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건설·환경·건축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건설·환경·건축공학부	78				
		건설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전자·기계공학부	지구환경과학전공	전자·기계공학부	110				
기계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디지털ICT공학전공								
전기·신소재공학부	스마트센서공학전공	전기·신소재공학부	48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							
반도체신소재공학전공			27	40	40			
식품영양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과과			40	40				
사범 대학 <안동 캠퍼스>	국어교과교육과		15	15				
	윤리교과교육과		15	15				
	영어교과교육과		22	22				
	교육공학		18	18				
	수학교육과		19	19				
	컴퓨터교과교육과		26	26				
	전기전자교과교육과		26	26				
	기계교과교육과		26	26				
유아교과교육과		28	28					
간호학부			74	74				
성인학습자학부	스포츠레저학전공		성인학습자학부	0	0	정원외(30명)모집 *<예천캠퍼스>		
	사회복지학전공							
	뷰티학전공*							
자유전공학부			149	149				

편제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부(과) 기준인원	비고						
단과대학	학부	학과(전공)		2026	2026							
공공수요 인재대학 <예천 캠퍼스>	동	물	생	명	공	학	과	110	110			
	모	빌	리	티	디	자	인			공	학	과
	소	방	방	재	재	학	학			과		
	응	급	구	조	조	학	학			과		
	경	기	지	도	도	학	학			과		
편제 및 모집단위: 4개 단과대학, 14개 학부, 16개 학과, 44개 전공				1,509	1,509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모집시기 및 입학전형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음

[별표 1-2]<신설 2025.2.27.><별표1에서 이동 2025.6.11.>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편제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부(과) 기준인원	비고
단과대학	학부	학과(전공)		2025	2025	
인문 사회 · IT 대학 <안동 캠퍼스>	인문·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인문·문화학부	437	112	
		중국어문·문화학전공				
		한자문화콘텐츠학전공				
		문화유산학전공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전공				
	사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57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사회과학부		경영학전공		사회과학부	
		회계세무학전공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법학전공				
		행정학전공				
		문화관광학전공				
데이터과학전공	패션·예술·체육학부	97	<미술학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입체조형전공, 음악학전공, <공연예술음악학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 현악전공, 작곡전공, 실용 음악학전공			
패션라이프스타일학전공						
공연예술음악학전공						
미술학전공						
생명 과학 · 공과 대학 <안동 캠퍼스>	바이오생명부	생명과학전공	바이오생명부	422	186	
		백신생명공학전공				
		스마트원예과학전공				
		산림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화학생명공학전공				
	건설·환경·건축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건설·환경·건축공학부		78	
		환경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지구환경과학전공				
	전자·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자·기계공학부		110	
		로봇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디지털ICT공학전공						
스마트센서공학전공						
전기·신소재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전기·신소재공학부	48			
	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					
	반도체신소재공학전공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40	40		
사범 대학 <안동 캠퍼스>	국어교육과	육과	15	15		
	윤리교육과	육과	15	15		
	영어교육과	육과	22	22		
	교육공학과	학과	18	18		
	수학교육과	육과	19	19		
	컴퓨터교육과	육과	26	26		
	전기전자교육과	육과	26	26		
기계교육과	육과	26	26			

편제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부(과) 기준인원	비고		
단과대학	학부	학과(전공)		2025	2025			
	유	아	교	육	과	28	28	
	간	호	학	부		74	74	
보건복지대학 <안동캠퍼스>	식품영양학과					27	27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상담학부			55	55	
		심리상담학전공						
	성인학습자학부	스포츠레저학전공	성인학습자학부			30	30	
사회복지학전공								
자유전공학부						149	149	
공공수요인재대학 <예천캠퍼스>	동물생명공학		학과				25	
	모빌리티디자인		공학				30	
	소방방재		학과				30	
	응급구조		학과				25	
편제 및 모집단위: 5개 단과대학, 12개 학부, 15개 학과, 43개 전공						1,539	1,539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모집시기 및 입학전형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음

[별표 2]<개정 2025.6.11.>

학위 종별 및 전공

학	위	종	별	학과 (부) 및 전공
문	학	사	사	국어국문학전공, 중국어문·문화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사학전공,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한자문화콘텐츠학전공, 문화유산학전공,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전공, 심리과학융합전공(융합전공), 유아교육과
경	영	학	사	경영학전공, 회계세무학전공
경	제	학	사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법	학	사	사	법학전공
행	정	학	사	행정학전공
이	학	사	사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생명과학전공, 백신생명공학전공, 지구환경과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데이터과학전공, 패션라이프스타일학전공
공	학	사	사	전기전자교육과, 화학생명공학전공, 기계교육과, 건설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로봇공학전공,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 반도체·신소재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디지털ICT공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스마트센서공학전공, 전자정보융합전공(융합전공) 모빌리티디자인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농	학	사	사	스마트원예과학전공, 산림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과
음	악	학	사	공연예술음악학전공
미	술	학	사	미술학전공
체	육	학	사	체육학전공, 스포츠레저학전공, 경기지도학과
교	육	공	학	교육공학과
간	호	학	사	간호학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학전공(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전공(융합전공), 사회복지학전공(성인학습자학부)
상	담	학	사	심리상담학전공(사회복지·상담학부)
보	건	학	사	응급구조학과
미	용	학	사	뷰티학전공(성인학습자학부)
스	마	트	팜	스마트팜융합전공(융합전공)
자	율	형	자	자율형자동차융합전공(융합전공)
디	지	털	전	디지털전통문화융합전공(융합전공)
디	지	털	마	디지털마케팅융합전공(융합전공)
문	화	콘	텐	문화콘텐츠융합전공(융합전공)
미	디	어	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융합전공(융합전공)
A	I	융	합	AI융합전공(융합전공)
스	마	트	관	스마트관광융합전공(융합전공)
문	화	재	미	문화재미술복원학융합전공(융합전공)
메	타	K	-ART	메타K-ART문화콘텐츠융합전공(융합전공)
도	시	공	간	도시공간조형예술융합전공(융합전공)
테	크	니	컬	테크니컬미디어디자인융합전공(융합전공)
상	담	복	지	상담복지융합전공(융합전공)
스	마	트	팜	스마트팜학제전공(학제전공)

[별표 3]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4]

학교기업

학교기업명	관련 학과(부)	사 업 종 목	소 재 지
경국 농산물 품질 검사원	스마트 원예과학전공	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전자상거래 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마.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 바. 농산물 감사·검정 위탁 서비스 사. 기타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국립경국대학교)
라오닐	모빌리티 디자인공학과	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나. 도장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 다. 디자인 및 생상에 대한 연구·개발 라. 자동차 및 각종 상품의 칼라 수정·보수 마. 페인트의 조색·판매 바. 각종 상품의 디자인 및 페인팅에 관한 용역의 제공 사. 커스텀 페인팅 아. 기타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청북리, 국립경국대학교)

학교기업명	관련 학과(부)	사 업 종 목	소 재 지
GPC바이오	동물생명 공학과	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나.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등 개량 기술 및 한우 수정란 관련 연구사업 다.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등 개량 관련 연구사업 라. 지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마. 지역 한우농가 및 산업체 기술지도 및 상담 바.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등 개량 기술 연구성과 물과 관련한 출판사업 등 사. 기타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경북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220 (목리, 국립경국대학교 영주실습장 내)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졸업증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학부(과) ○○전공
(전공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제전공)]을 이수하고 (○○학사, ○○학사)의 자격을 갖추
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국립경국대학교 ○○○○ 대학장 ○○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 ○○ 학위 ○○○(인)

학위번호 : 국립경국대 연도(학) 일련번호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graduat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in (소속학문 영문명)

with all its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Given at Andong,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학위수여 일자)

(단과대학장 서명)

UNIVERSITY SEAL

(총장서명)

Dean of the(단과대학 영문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제 호

졸 업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학부(과) ○○전공
(전공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제전공)]을 이수하고 (○○학사, ○○학사)의 자격을 갖추
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국립경국대학교 ○○○○ 대학장 ○○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 ○○ 학위 ○○○(인)

학위번호 : 안동대 연도(학) 일련번호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528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graduat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in (소속학문 영문명)

with all its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Given at Andong,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학위수여 일자)

(단과대학장 서명)

UNIVERSITY SEAL

(총장서명)

Dean of the(단과대학 영문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U 연도(B) 일련번호

In accordance with Addenda Article2 of the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Presidential Decree No.35282)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 ○ 학부(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국립경국대학교 ○ ○ ○ ○ 대학장 ○ ○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 ○ ○ 학위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국 립 경 국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국립경국대학교-학점-연도-일련번호